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2. 3. 18.(금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공간정보 제도과	담 당 자	과장 유승경, 사무관 박공열 ☎ (044) 201-3478, 3479
보 도 일 시		2022년 3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-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% 감면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\*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.

\* (특별재난지역 선포일) 울진군·삼척시(3.6), 강릉시·동해시(3.8)

- 동해안 산불로 주택, 창고,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·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.

\*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, 토지분할측량, 지적현황측량,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

-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\*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\* 참고자료2 첨부

-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'피해사실확인서'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- 주택, 창고, 농축산 시설의 소실(전소, 반소)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,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, 폭설, 태풍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.
  -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, 2019년 태풍(미탁) 피해지역, 2020년 코로나-19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.

\*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'17년부터 총 41.6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

-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(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, <http://baro.lx.or.kr>), 및 전화(바로처리콜센터, 1588-7704)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박공열 사무관(☎044-201-34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1.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8억 원)**

- 2017. 1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(규모 5.5) 주거용 주택의 전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% 감면하고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제2항에 의거 50% 감면
- 위험도평가단 진단 결과 “전파”로 판정된 경우

**2.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0.2억 원)**

- 2019.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거용 주택의 소실(전소 또는 반소)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% 감면하고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의거 50% 감면
-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감면 가능

**3. 태풍(미탁)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0억 원)**

- 2019. 11월 태풍(미탁)에 의하여 발생한 주거용 주택 소실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% 감면하고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의거 50% 감면
-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감면 가능

**4. 코로나-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31.1억 원)**

- 2020. 3월 ~ 2021.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같은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거 측량수수료 30% 감면

